



제297회 임시회
2011.01.21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1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이 직속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, 그 밖의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학생교육문화원 사용료 징수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(안 별표 2)
-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별표 5 신설)
- 수련원 및 야영장 사용료 중 식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 33조 단서 신설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2010. 10. 29.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에 따라,

-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이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본청 직속기관으로 변경되어, 이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
 -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사용료 중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서 운영하던 시설이 주중동 511-9번지로 통합되어 운영됨에 따라 기존 영동 79번지 시설 사용료를 삭제하고, 현재 사용 중인 주중동 시설·설비의 증가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,
- 사용료의 산정은 타시·도 문화원 및 학생회관의 사용료를 비교 분석 및 우리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생각됨.
- 다만, [별표 2], [별표 5]의 사용료 산정기준에서 “냉·난방비, 수영장 단체”의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.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자치법[법률 제10272호, 2010. 4.15, 타법개정]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4.1>